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0. 4. 20.

사회건설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3월 26일

나. 제출자 : 윤준용 의원 외 5인

다. 회부일자 : 2010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회의(2010. 4. 15)  
상정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윤준용 의원)

####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육성하고자 도림동당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전통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방법란에 “도림동당제(도림동)”을 추가하고, 동 통·폐합으로 통합된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의 [별표 1])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육성하고자 도림동당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2항(진흥사업대상) [별표 1]의 전통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방법란에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하고,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하며, “도림동당제(도림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
----------	-----

발의연월일 : 2010. 3. 26.  
발 의 자 : 윤준용 의원 외 5인

###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육성하고자 도립동 당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전통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방법란에 “도립동당제(도립동)”을 추가하고, 동 통폐합으로 통합된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의 [별표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나. 예산조치사항 : 있음(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별표 1]의 전통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방법란에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하고,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하며, “도림동당제 (도림동)”을 추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진흥사업대상(제4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행사명</th> <th>대상 및 범위,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문화 예술 예산 지원</td> <td>전통 문화 행사</td> <td>-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3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곶지부군당(신길2동), 도당(신길3동)</td> <td>정기</td> </tr> </tbody> </table>		구분	행사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문화 예술 예산 지원	전통 문화 행사	-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3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곶지부군당(신길2동), 도당(신길3동)	정기	<p>[별표 1] 진흥사업대상(제4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행사명</th> <th>대상 및 범위,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문화 예술 예산 지원</td> <td>전통 문화 행사</td> <td>-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곶지부군당(영등포본동), 도당(신길3동), <u>도림동당제</u> (도림동)</td> <td>정기</td> </tr> </tbody> </table>		구분	행사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문화 예술 예산 지원	전통 문화 행사	-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곶지부군당(영등포본동), 도당(신길3동), <u>도림동당제</u> (도림동)	정기
구분	행사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문화 예술 예산 지원	전통 문화 행사	-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3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곶지부군당(신길2동), 도당(신길3동)	정기																
구분	행사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문화 예술 예산 지원	전통 문화 행사	-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곶지부군당(영등포본동), 도당(신길3동), <u>도림동당제</u> (도림동)	정기																